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지 제9호서식(인가·허가·협의·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상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허가등 신청 당시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허가등 신청 이후에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인가·허가·협의·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1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전자우편)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					
	신청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인가·허가·협의·승인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협의·승인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허가등 신청 당시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허가등 신청 이후에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